#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복기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98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6.

발 의 자:복기왕·장철민·한민수

이연희 · 김태선 · 채현일

염태영 · 정준호 · 정성호

박용갑 • 안태준 의원

(119]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입주자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보수 지급과 처우 개선, 인권 존중을 위해 노력하고 업무외 부당한 지시 등을 하지 않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위와 같은 입주자등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실 대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제도 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이 기초자료 미비로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적정 보수 지급,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·인권존중, 금지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규정함으로써 제도 실태를 정책에 적극 반영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인권존중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65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조의2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실태조사의 주기, 범위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1. 제2항에 따른 적정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
- 2. 근로조건, 휴게시설 설치 등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인 권존중에 관한 사항
- 3.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
-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65조의2(경비원 등 근로자의	제65조의2(경비원 등 근로자의		
업무 등) ① ~ ④ (생 략)	업무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		
	<u>야</u> )		
<u>&lt;신 설&gt;</u>	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		
	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		
	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		
	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		
	우 실태조사의 주기, 범위, 방		
	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		
	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	
	<u>1.</u> 제2항에 따른 적정 보수 지		
	급에 관한 사항		
	2. 근로조건, 휴게시설 설치 등		
	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		
	및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		
	3.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		
<u> &lt;신 설&gt;</u>	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		
	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		
	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		
	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		
	하여 실시할 수 있다.		